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86회 1차 정례회

검 토 보 고 서

2026. 9. 9.(수)

순서	검 토 안 건	제 안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판문화진흥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차해영 의원 외 12인

행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유준상)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판문화진흥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보고자 : 전문위원 유준상)

1. 제출자 및 제출경과

○ 제출자 : 차해영의원 외 12인

○ 제안일 : 2026. 8. 21.

○ 회부일 : 2022. 8. 24. (의안번호 : 26 - 94)

2. 제안이유

○ 마포구 출판문화진흥센터 운영위원회에 센터 입주 계약기간이 만료된 사람을 위원으로 추가하여 실제 입주 경험을 바탕으로 한 현장 의견을 반영하고, 센터의 운영 개선 및 발전 방향을 모색함으로써 운영위원회의 내실화 및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운영위원회 위원 구성 추가(안 제7조)

4. 관계법령

○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

○ 입법예고 : 2026. 8. 24. ~ 8. 28.

5. 검토보고

1 조례의 개정 취지

○ 본 조례안은 차해영의원 외 12인이 공동발의 하여 행정경제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마포구 출판문화진흥센터 운영위원회에 센터 입주 계약기간이 만료된 사람을 위원으로 추가하여 실제 입주 경험을 바탕으로 한 현장 의견을 반영하고, 센터의 운영 개선 및 발전 방향을 모색함으로써 운영위원회의 내실화 및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 **안 제7조제4항제3호 신설하는 내용으로** 마포출판문화진흥센터 **입주 계약기간이 만료된 사람**을 해당 조항의 적용 대상에 새롭게 포함하도록 규정함.

○ 기존 제7조제4항제3호를 **제4호로 이동**하여 조문 체계를 정비함.

제7조(운영위원회 구성 등) ① 구청장은 출판문화진흥센터 운영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판문화진흥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출판문화진흥 업무 관련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구 소속 관계 공무원 1명
2.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1명
3. 마포출판문화진흥센터 입주 기간 만료 대표자 1명
4. 관련 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3 조례 개정 필요성 검토

○ 마포출판문화진흥센터 운영 등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임

- 운영위원회 심의·의결 기능으로 ① 출판문화진흥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출판문화진흥센터 명칭에 관한 사항 ③ 입주 승인, 입주 기간 연장, 입주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등에 관한 사항 ④ 수탁자의 사업실적 및 관리능력 평가에 관한 사항 ⑤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현행 조례에서 운영위원회 구성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등으로 '센터에 입주한 경험이 있는 자'가 포함되지 않아 센터 운영의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운영위원회 구성은 업무 관련 국장, 구 소속 관계 공무원 1명,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1명, 관련 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총 7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조례에 규정되어 있음

○ 마포출판문화진흥센터 운영의 실효성 및 내실화를 위해 운영위원회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실무적 경험과 현실적인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센터 입주한 경험, 입주 기간을 만료한 자'를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추가 필요

- 입주 기간을 만료한 자는 센터의 혜택을 경험한 바, 실제 센터의 운영 실태와 문제점 등 현실적인 운영 개선 및 지속적인 참여로 센터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

6. 종합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판문화진흥센터 운영위원회가 출판문화진흥센터 운영 등에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 하는 기구로, 관계 공무원, 전문가 등으로만 운영위원회 위원이 구성되어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현안에 대해 파악 및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는 사항을 고려해 ‘센터 입주한 경험, 입주계약 기간 만료자’를 추가하여 센터의 현실적인 운영 개선 및 발전 방향 제시로 내실화 및 실효성 제고 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참고1 관계 법규

□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그 문화시설이 이용되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8.>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건축물에는 문화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문화시설의 관리를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참고2 마포출판문화진흥센터 입주 현황(2025)

입주실	오픈오피스	입주기간 만료자
20개실	74석	4명

번호	호수	기수	입주일	만료일	비고
1	301	2기	2021.07.13.	2024.07.12.	퇴실(사후추인) / 입주기간 만료자
2	301	4기	2024.08.02	2026.08.01	
3	302	4기	2024.07.16	2026.07.15	
4	303	2기	2021.07.13.	2024.07.12.	퇴실(사후추인) / 입주기간 만료자
5	303	4기	2024.08.12	2026.08.11	
6	304	4기	2024.08.12	2026.08.11	
7	305	4기	2024.07.16	2026.07.15	
8	306	4기	2024.07.16	2026.07.15	
9	307	4기	2024.07.31	2026.07.30	
10	308	4기	2024.07.16	2026.07.15	
11	309	4기	2024.07.16	2026.07.15	
12	310	4기	2024.08.16	2026.08.15	
13	311	2기	2021.11.01.	2023.10.31.	퇴실 / 입주기간 만료자
14	311	4기	2024.07.26	2026.07.25	
15	312	4기	2024.07.16	2024.07.16	
16	313	4기	2024.07.16	2026.07.15	
17	314	3기	2022.12.12.	2025.12.11	
18	315	3기	2022.08.01	2025.07.31	
19	316	3기	2022.10.05	2025.10.04	
20	317	2기	2021.07.13.	2024.07.12.	퇴실(사후추인) / 입주기간 만료자
21	317	4기	2024.08.02	2026.08.01	
22	318	4기	2024.07.16	2026.07.15	
23	319	3기	2022.08.01	2025.07.31	
24	320	3기	2022.08.01	2025.07.31	

※출처 : 마포구청 문화예술과(2025)